

제1조~제12조

정의 및 납세기 등 총칙



제1조의 요약

- 내국법인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 외국법인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법인이라 함)
- 비영리내국법인 : 내국법인 중 민법 제32조 설립법인, 사립학교법·특별법상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외국법인 : 외국의 정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사업연도 : 법인의 소득을 구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일반적으로 만 1년임)
- 연결납세방식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의 손익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단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
- 연결법인 및 연결집단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으로 연결법인 전체를 연결집단이라 함.
-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법인을 연결모법인이라하고, 연결모법인의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연결자법인이라 함.
-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제2조의 요약

- 내국법인 : 수익사업·비수익사업 모두에 대해 전세계소득 과세
- 외국법인 : 수익사업·비수익사업 모두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내국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 대해 전세계소득 과세
- 외국비영리법인 : 수익사업에 대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내국법인·외국법인 : 국내부동산의 자가급등지역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세 과세안됨.
- 법인세 원천징수분 세금의 납세의무 : 내국법인, 외국법인,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 납세의무 있음.
- 연결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있음.



제3조의 요약

- 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에 법인세 부과
-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만 법인세 과세되고 청산소득은 비과세
-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분야로만 한정함(수익사업분야 : 일반사업수입,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출자지분양도수입,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아닌 일반용도 고정자산(분양권, 이용권·회원권 등 포함) 처분수입, 계속적 행위의 수입으로서 채권 등 매매차익 등임. 단,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인수정리사업은 제외됨).
-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되고,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수익사업소득만 과세됨.

법인구분 \ 소득구분		과세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	청 산 소 득	부동산 등 양도차익 법인세
내국법인	영 리	과세(전세계소득)	과 세	과 세
	비영리	수익사업만 과세	비과세	과 세
외국법인	영 리	국내원천소득 과세	비과세	과 세
	비영리	국내원천수익사업소득 과세	비과세	과 세

- 연결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통합소득에 과세됨.



제4조의 요약

- 법인세를 부과할 때 소득의 귀속과 거래의 내용에 있어 외관·법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의거 부과함(실질귀속자 과세, 실질내용대로 과세).
- 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나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르면 실질귀속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함.
-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여하나 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본 법을 적용하여 계산함.
- 거래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함.



제5조의 요약

- 신탁재산의 소득은 통상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영·관리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이를 지정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과정으로 흘러가는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 있다 하더라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당해 신탁의 위탁자 및 이의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
-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의 적용을 받은 법인인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당해 신탁회사 고유업무상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해 구분경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제6조의 요약

- 사업연도는 법령·정관상 정해진 1회계기간으로 하며 최대 1년임.
- 내국법인의 법령·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대해 따로 규정 없으면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함.
-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 사업연도 규정이 따로 없으면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소득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함.
- 사업연도 신고해야 할 법인이 신고 안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함.



제7조의 요약

- 확정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다음 날부터 3개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적법기한(3개월내)내에 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사업연도가 변경되면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1년이 안되더라도 1사업연도로 보며, 해당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변경된 사업연도에 포함하며, 1개월 이상이면 그대로 하나의 사업연도로 봄.



제8조의 요약

- 사업연도중 해산 :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해산일)까지 1사업연도로, 해산등기일(파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각각 1사업연도로(각각 별도 사업연도임)
- 청산중 법인의 잔여재산가액확정 :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된 날까지
- 사업연도중 합병·분할·분할합병 사유의 해산 :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혹은 분할등기일)까지
- 청산중 법인의 사업계속 :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사실상의 사업계속일)까지가 1사업연도,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가 다시 1사업연도임.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 전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봄.
-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 개시일부터 국내사업장 가지지 않은 날까지(다른 국내사업장 계속 보유하면 사업연도 별도외제 안함. 계속적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소득발생없음의 신고 : 당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득없음의 신고일까지



제9조의 요약

- 내국법인의 납세지 : 본점 · 주사무소소재지(국내에 본점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는 실질적 관리장소로 함)
- 법인격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 단체의 사업장소재지, 부동산소재지, 직전년 수입금액이 큰 부동산소재지, 사업장 없는 단체는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소재지 등임.
- 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 소재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지 · 부동산임대, 양도자산 등 자산의 소재지
-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 주된 사업장(최초로 납세지를 정한 곳으로 판단함) 소재지, 2개 이상의 자산 소재지이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선택신고한 장소임.
-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 : 국내법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국내소재지 없는 경우는 양도되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임.



제10조의 요약

- 납세지 법정 장소가 부적당한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납세지 지정하고, 이를 납세자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납세지 지정 사유 : 소재지 · 등기지 불일치, 본점 등과 자산소재지 및 사업장의 분리 등 조세포탈 소지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소재지 판단 불능인 경우, 다수자산소유 외국법인이 신고안한 경우 등임.



제11조의 요약

- 법인의 납세지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15일내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지 변경신고로 대체 가능함).
- 납세지 이사 · 이전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의 적법신고가 없는 경우 종전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며, 적법기한후 변경신고하면 신고한 때부터 납세지로 함.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12조의 요약

법인세는 납세지(적법 납세지, 지정된 납세지, 변경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즉 법 규정상 적법한 납세지로 확정된 장소의 관할세무서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과세관할권자이다.